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Transfer Pricing & Customs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 OECD 발표자료 및 국제조세 관련 이슈사항 및 동향에 대해서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Key contacts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국제조세 Update

조심2019서0291, 2021.02.03

쟁점사용료가 정상가격을 초과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청구법인은 1988.2.10. 설립된 영화배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000에 소재하는 000가 100% 소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000과 체결한 배급계약에 따라 2007년부터 000가 소유하고 있는 영화필름 및 TV프로그램 등의 배급권을 허여받아 국내에 배급하고 같은 기간 000에게 쟁점사용료를 지급하였다.
- 조사청은 2017년 중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2~2016사업연도 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국외특수관계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사용료의 정상가격범위를 산출한 후 정상가격범위를 초과하여 쟁점사용료를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법인세 000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삼정 KPMG

이전가격 & 관세 본부

02 March 2021

KEY CONTACTS



강길원 부대표(본부장)

(Tel: 02-2112-0907)



백승목 전무

(Tel: 02-2112-0982)



김상훈 상무

(Tel: 02-2112-7939)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은 이전가격 분석 시 영업외손익을 영업이익률에 포함시켰다.
-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선정한 비교가능회사에 대하여 제외기준을 추가하여 비교가능회사를 새로 선정한 것은 위법·부당하지 아니하다.
 - 독립기업이라면 평균적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사업을 계속해서 하는 경우가 없고, 청구법인은 일정 수익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쟁점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계약구조에 의하여 구조적으로 영업손실이 발생할 수 없어 평균 영업손실이 발생한 회사를 비교가능회사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다.
 - 비교가능회사를 선정할 때 사용할 재무자료의 신뢰성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를 비교가능회사에서 제외하는 것은 사용하는 자료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다.
 - OECD 이전가격 지침 3.33은 "상업용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때 질보다 양을 따져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양적인 측면을 중시하여 자료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감사원도 조사청이 비교가능회사를 선정할 때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를 제외하지 않은 경우 지적하고 있다.
 - 법령 어디에도 정상범위 산출 시 비교가능회사의 수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평균값조차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청구법인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의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응하였고,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전세계 이전가격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떠한 근거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기능분석 시 청구법인과 그 거래상대방인 특수관계회사의 기능을 검증하는 것은 필수적이고 당연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이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을 거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속한 그룹 내 이전가격정책 담당자와의 면담뿐만 아니라 컨퍼런스 콜까지도 거부하였다.

[판시]

-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에는 비교가능성이 있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가격이 신뢰할 만한 수치로서 여러 개



김태준 상무

(Tel: 02-2112-0696)



윤용준 상무

(Tel: 02-2112-0277)

존재하여 정상가격의 범위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 및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돌아가는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처분청이 비교가능회사를 선정하는 데 사용한 제외기준이 불합리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정상가격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다만, 처분청은 주식회사 000을 2013사업연도의 비교가능회사에서 제외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한 후 2013사업연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조심2020서0852, 2021.01.21

법원 판결 결과 부적합한 정상가격 산정방법으로 확정된 국세청 모형에 의해 지급보증수수료를 세무조정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므로 당초 과다신고한 법인세를 환급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청구법인은 종합상사를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3~2017 사업연도에 해외자회사들의 현지에서의 자금차입과 관련하여 “지급보증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증금액의 0.3% 상당액을 지급보증 수수료로 수취하였다.
- 청구법인은 국세청 모형이 적법한 쟁점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당초 법인세 신고 시 익금산입한 쟁점금액 전부를 익금불산입하여 2013~2017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을 환급하여 달라고 2019.3.7.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 의견]

- 청구법인이 인용의 논거로 내세우는 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11.29. 선고 2015누66006 판결)에서 “국세청 모형은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정방법으로 볼 수는 없으나, 해외 신용평가기관인 000 모델(국조법 시행령 제6조의2 제5항 제3호 - 예상위험 및 기대편익 방법)을 활용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방법은 합리적” 이라고 판결하였다.

- 000 모형에 의해 쟁점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을 산출하면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 시 적용한 국세청 모형에 의한 세무조정보다 익금산입할 지급보증수수료 금액이 증가하여 청구법인에게 더욱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세액을 환급할 이유가 없다.

[판시]

- 청구법인은 이 건 심판청구시 쟁점지급보증수수료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급보증 수수료율의 산정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은 제시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이 제시한 000모형에 대한 정상가격 산정내역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 청구법인이 당초 법인세 신고 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보다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2.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 Update

Vietnam: Royalty Payment – Tax implications

February 12, 2021

베트남: 로열티 지급 – 세무관점에서의 시사점

베트남 정부는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 지적재산권 및 고급기술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로열티 거래에 대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로열티 소득의 종류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IP rights)은 기관 혹은 개인이 보유한 지적재산에 대한 권리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저작권, 저작인접권, 산업재산권, 신품종에 대한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저작권(Copyright)은 기관 및 개인이 창출하거나 보유한 산출물 (works)에 대한 권리를 뜻하며, 저작인접권이란 퍼포먼스, 음성 및 시각적 효과와 방송 및 위성송출신호 등에 대한 기관 및 개인의 권리를 말합니다.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s)은 기업 및 개인이 창출하거나 보유한 발명, 산업디자인, 폐쇄회로 등의 설계, 영업비밀, 상표, 상호명 및

지리적표시 등에 대한 권리를 뜻하며, 이는 곧 불공정한 경쟁을 예방할 수 있는 권리로 볼 수 있습니다.

기술(Technology)은 자원을 제품으로 변환시키는 솔루션, 공정 및 노하우 일체를 의미합니다. 기술의 이전이란 기술의 이전권리를 보유한 일방이 기술의 양수인(transferee)에게 그 기술에 대한 소유권 혹은 사용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열티 거래는 많은 산업군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지만 그 목적은 모두 유사합니다. 로열티 거래는 계약에 의해 발생하고, 지적재산 소유권자가 해당 자산에 대한 타인의 사용을 허여하고, 이에 따른 사용료 소득을 수취합니다.

세무상 로열티 소득 처리

제반 형태의 지적재산(IP)의 사용권 및 사용권의 이전대가(창작물에 대한 원작자 혹은 소유자가 보유한 권리에 대한 사용 및 이전 대가 등을 포함), 기술 이전 혹은 소프트웨어 저작권 허여에 대한 로열티 지급액은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됩니다.

기술이전에서 발생한 소득과 지적재산(IP)의 이전에서 발생한 소득은 각각 기술이전법(Law on Technology Transfer) 및 지적재산권법(Law on Intellectual Property)의 적용을 받으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술이전 또는 IP 이전 계약이 기계·설비의 이전과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전되는 기술 혹은 IP에 해당하는 부분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기술 또는 IP의 가액을 별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계·설비와 함께 이전되는 기술 및 IP 가액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로열티 소득처리 및 적용세율은 1) 이전되는 권리의 성격, 2) 현지 세무당국의 해석, 3) 납세자의 성격(개인 vs. 기관) 및 설립지 (베트남 vs. 해외)에 따라 상이합니다.

세무적인 관점에서 로열티 소득은 다음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i) 지적재산권 대상의 사용 허여 및 사용권 이전
- (ii) 기술 및 지적재산권 소유 권리 이전
- (iii) 소프트웨어 저작권 이전
- (iv) 소프트웨어 관련 용역

외국법인·기관이 베트남 내에서 수취하는 (ii), (iii), (iv) 항목에 해당하는 소득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나 원천세율(법인세) 10%는 적용됩니다. 반면, (i) 항목에 따른 로열티 지급액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저작권이 저장도구(예: USB)에 보관되어 운반되거나 기계·설비의 이전거래에 부수되는 경우에는, (해당 저장도구 또는 기계·설비의 금액이 별도 구분될 수 있다면) 그 저장도구와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가 추가적으로 부과됩니다.

만약 IP 이전주체가 개인인 경우에는, 해당 개인에게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 금액 중 VND 1 천만(약 USD 434 상당)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5%의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PIT)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비근로소득은 건별로 원천징수되거나 자진신고 되어야 합니다.

반면, 베트남 법인이 이전주체로 로열티 거래가 발생하고 그 거래의 성격이 위 (i), (ii), (iii), (iv) 중 어느 것이라도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히, 법인의 사업활동이 (iii) 와 관련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생산과 관련하여 기타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법인세 혜택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로열티 지급이 수입하는 재화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로써, 로열티가 그 거래계약서의 거래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고 실제 지급되거나 지급될 물품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면 로열티에 대해 수입관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세조약의 적용가능성

베트남은 80 개 이상의 국가와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이하 "조세조약")을 체결하였으며, 다수의 국가들과 조세조약 체결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베트남이 체결한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로열티의 범위를 한 문학적·예술적·과학적 작업물(영화 등), 특허권, 상표권, 설계 혹은 모형, 계획, 기밀 공식 또는 공정, 산업적·상업적·과학적 경험 등의 정보의 사용, 사용권, 저작권에 대해 지급하는 일체의 대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방법은 그 국가의 내국세법 또는 조세조약에서 찾을 수 있으며, 베트남의 경우에는 세액면제 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감면이 이에 포함됩니다. 또한, 많은 조세조약에서 명시된 로열티 제한세율이 국내 원천세율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내 원천세율을 적용하여 세액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시사점

납세자가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하거나 거주자(tax resident)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세조약을 적용하여 외국인계약자세 (Foreign Contractor Tax, FCT) 및 개인소득세액 중 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거나 절감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은 “외국기업이 베트남 내 사업 및 생산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사업장”으로 정의됩니다. 대부분의 조세조약에 따르면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을 두고 있는 외국회사가 자국에서 소득을 수입하고 이에 조세조약 및 자국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한 경우, 베트남 정부는 베트남 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IP 권리 및 기술의 다양한 분류를 고려할 때, 납세자가 거래의 성격을 잘 파악하고 해당 거래(예: 효익 및 성격)를 입증할 수 있는 적정 문서를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신중함을 기하기 위해서는, 무형자산의 양도인이 관할당국(예: 베트남 과학기술부)에게 해당 이전거래에 대해 어떠한 범주에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받는 것을 권고합니다.

OECD Guidance on Covid-19 Transfer Pricing Implications: a China Perspective

February 11, 2021

COVID-19에 대한 OECD 이전가격 지침: 중국 관점

2020년 12월 18일 OECD는 COVID-19 팬데믹 영향에 대한 이전가격 지침(Guidance on the transfer pricing implications of the COVID-19 pandemic, 이하 “COVID-19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지침은 COVID-19 환경에서의 독립기업원칙 및 기존 OECD 이전가격 지침 적용방안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COVID-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국가별로 그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납세자가 속한 시장 혹은 국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독립기업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COVID-19 팬데믹의 타격을 입은 첫 번째 국가이자 그 타격으로부터 가장 먼저 회복한 국가로 평가됩니다. 중국은 2020년 1월 말부터 2월 초까지 강력한 봉쇄조치를 통해 바이러스 확산을 억제하였고 2월 말 이후부터는 경제활동이 점차 정상화되었습니다.

중국 납세자들은 2020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신고 및 이전가격 문서화를 진행함에 있어, 작년 한 해 동안의 다음 경제적 특수성 및 현지 이슈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COVID-19 팬데믹 기간 중 발생한 비경상적 비용

COVID-19 팬데믹 초기에는 중앙정부의 강력한 봉쇄조치에 따른 영업중단으로 인해 회복불가능한 고정비용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사업활동이 재개된 이후에도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사업장 내 감염예방 비용 등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였습니다.

COVID-19 지침 제 2 장은 팬데믹 기간 동안 발생한 예외적 비용을 특수관계자 간에 배분할 때에는, 독립기업들이 비교가능한 상황에서 그러한 비용을 배분하는(할)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Para. 47-50). 즉, 제 3 자 고객에게 청구하지 않을 비경상적 비용이라면 특수관계거래에서도 배분 또는 보전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은 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나아가서는 이전가격 분석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비경상적인 비용이 발생한 경우, 중국 납세자들은 먼저 특수관계거래 당사자들의 기능 및 위험, 그룹의 이전가격 정책, 기존 특수관계거래 계약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비용 및 위험을 특수관계자 간에 배분하는 방법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비경상적 비용이 중국 현지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수익성지표(Profit level indicator, PLI) 산출 및 비교가능성 분석 시 특수한 요인으로 보아 조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정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비용의 성격 및 금액자료의 구비가 필요하며, 유사한 성격의 비용이 발생한 비교가능회사들의 2020년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다면 이를 조정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대한 비교가능성 분석

2020년 2월 이후, 팬데믹 확산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생산활동이 중단된 반면, 중국은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특히 제조부문이 급성장하는 수혜효과를 누렸습니다. 또한 중국의 의료장비, 통신서비스, 음식 포장판매, 전자상거래 및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명품 소매업 등이 COVID-19 팬데믹 수혜 산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는 납세자들은 적절한 비교가능회사를 식별하고 분석대상기간을 설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2020년 중국 경제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교대상기간 선정에 대한 고찰

COVID-19 지침 Para. 14 은 비교가능성 분석목적으로 분석대상 특수관계거래와 동일한 기간의 데이터를 사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기별 재무자료 (Para. 11) 혹은 별도의 분석대상 기간 (Para. 27~29)을 사용하는 것이 분석자료의 비교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어느정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은 먼저 2020년 실제 성과를 팬데믹 이전 기간의 경상예산 및 사업계획과 비교 분석하여 이전가격분석 시 고려해야 할 특수요소들을 식별하여야 합니다. 만약 납세자들의 2020년 말의 양호한 실적 덕분에

연초의 실적 부진(영업정지 기간)을 상쇄하고 정상적인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과거와 유사한 분석방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지 이전가격 실무에서는 대상 과세연도 이전의 3 개년 가중 평균 재무자료를 사용합니다.)

한편, 납세자의 2020 사업연도 실적이 팬데믹 영향으로 인해 기존 사업계획과 크게 달라진 경우에는 2020 년 기준 비교가능회사 자료 사용, 전체 연도가 아닌 분기별 데이터 사용, 특수요인 조정, 회귀분석 등과 같은 다른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지리적 비교가능성 고려사항

COVID-19 지침은 시장 혹은 지리적인 COVID-19 영향 및 정부지원의 차이 역시 중요한 비교가능성 요소 중 하나이며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Para. 32 및 84).

거래순이익률방법 사용 시, 납세자 소재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비교가능기업을 선정할 경우에는 시장적 비교가능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2020 년 국내외 비교가능기업 재무성과와 차이와 지리적/시장 차이 간 경제적 연관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러한 차이가 실제로 존재한다면 비교가능회사 검색기준을 수정하여 잠재적 중국 소재 비교대상기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기능 및 위험과 같은 핵심적인 비교가능성 요소를 무시하고 지리적 비교가능성을 먼저 고려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또한 지리적으로 비교가능한 기업 (혹은 거래) 도출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통적인 비교가능성 조정방식을 사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손실 발생에 따른 이전가격 소득 조정

중국 과세당국은 단순 기능 및 제한적 위험을 부담하는 기업은 합리적인 이익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습니다. (국가세무총국공고 [2017] 제 6 호 특별납세조정 및 상호합의절차 관리방법 제 28 조).

과세당국은 모니터링과 세무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단순 기능을 영위하는 특수관계거래 수행기업들의 개별기업보고서 검토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납세자가 특수관계인의 잘못된 의사결정, 자원 저활용, 매출 부진, 연구개발 실패 등으로 인해 위험과 손실을 부담할 경우에는 세무당국이 특별 소득조정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한적인 위험부담을 부담하는 유통업자, 위탁생산업자, 임가공생산업자, 위탁연구개발업자 등이 손실을 부담할 경우 중국 과세당국의 정밀 세무조사 대상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반면, COVID-19 지침 Para. 40 은 "제한적 위험"을 부담하는 회사라 하더라도 팬데믹 기간 동안 손실을 인식할 수 있으며, 특수관계거래

당사자의 기능과 위험을 세부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이러한 손실을 입증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에 비추어 볼 때, 중국 과세당국이 COVID-19 라는 유례없는 상황에서도 기존의 입장을 고수할 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한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기업의 인식한 손실

제한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납세자가 특수관계거래에서 손실을 인식하는 경우에는 이전가격보고서에 손실 원인과 부담 주체에 대한 정확한 설명(예: 계약상 불가항력 요소로 분류될 수 있는 모든 요소)을 충분히 입증해야 합니다. 제한적 위험을 부담하는 중국회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위험을 부담함에 따라 인해 손실을 기록할 경우에는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이전가격 조정을 보상받아야 합니다.

특수관계거래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예: COVID-19 발생 전 구입한 재고자산의 평가손실)은 거래 상대방과의 일회성 거래로 보전될 수 있겠으나, 다른 상품의 가격에 이를 가산하여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조정하거나 향후 재화거래에 이러한 보상조정을 반영하는 것은 독립기업원칙에 위배됩니다.

손실 혹은 비경상적 이익 모니터링

COVID-19 지침은 과세당국이 일정한 유연성을 유지하고, 납세자가 세무신고 기간 이후에 이용할 수 있는 비교가능한 데이터에 기초하여 이전가격 조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Para. 22~23).

만약 제한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중국회사가 2020 년에 오히려 정상적인 영업기간에 비해 초과이익을 달성하였다면 (예: 여행규제에 따른 중국 내 명품판매 증가, 타 지역 생산법인 가동중단에 따른 중국 내 생산물량 증가), 해당 중국회사는 사업주관자에게 이러한 초과이익을 지급하는 조정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현행 중국 이전가격 규정 및 실무관행상 이러한 초과이익이 잘못된 가격 책정(예: 재화 및 원재료의 수입가격)에 기인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국 내 소득을 감소시키는 조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과세당국이 이러한 초과이익을 중국의 지리적 이점(location specific advantages)을 나타내는 잠재적 신호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다국적기업은 중국법인의 수익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중국 정부 팬데믹 지원정책에 대한 이전가격 분석

중국 중앙 정부 및 지방 정부는 COVID-19 대응으로 일련의 지원정책을 발표했습니다. COVID-19 지침 Para. 67~69 에 따르면 임대료 경감, 소득세

및 사회보장제도 공제 경감, 대출금 할인 감면 등과 같은 중국 정부 지원은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 정책으로 사료되는 바 이전가격 분석에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납세자가 상기 설명한 것과 같이 팬데믹 관련 비경상적인 비용을 수익성지표 산출 시 조정하였다면, 정부지원의 영향 역시 비교가능성 분석 및 수익성지표 산출 시 적절하게 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APA)에 미치는 영향

지난 몇 년간 중국 과세당국은 다국적기업들에게 APA 신청을 장려해왔으며, APA 협상에 자원을 대폭투입해옴에 따라 APA 타결 건수 역시 증가하였습니다. COVID-19 에 대응하여 중국 국가세무총국(STA) 및 지방 과세당국은 온라인 혹은 기타 수단을 통하여 APA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납세자들이 이전가격 이중과세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COVID-19 가 기합의된 APA 대상연도에 대한 주요 가정에 영향을 미친 경우, 중국 납세자는 과세당국과 적극협의 하여 APA 요건 이행을 위한 적절한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Para. 96). 만약 APA 조건의 수정이 필요하다면, 그러한 수정은 특수관계거래의 정의와 비교가능성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직 APA 협상 단계에 있는 납세자라면 과세당국과 COVID-19 의 영향을 논의하고, 팬데믹의 영향을 입은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합의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일부 중국 지방 과세당국은 일방적 APA 를 위한 간소화된 절차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3. 관세 Update

파나마 합류로 '한-중미 FTA' 전체 발효, 철강·자동차 수출길 확대 (경제뉴스 머니S, 2021년 2월 25일)

한-중미 자유 무역협정(FTA)이 다음 달 1 일 전체 발효되면서 우리 기업의 중미시장 진출 길이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중미 FTA 유일한 미 발효국이었던 파나마가 최근 국내 발효절차를 모두 완료해 3 월 1 일 파나마 발효를 기점으로 한-중미 FTA 가 전체 발효된다고 25 일 밝혔습니다.

그간 우리나라는 파나마를 제외한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 등 4 개국과 한-중미 FTA 를 부분 발효한 상태였습니다.

한-중미 FTA는 한국과 중미 5개국 모두 전체 품목 수 기준 95% 이상의 높은 시장 자유화를 달성했습니다.

파나마의 경우, 총수입액 기준 99.3%에 달하는 자유화를 통해 가장 큰 폭의 관세 철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자동차·철강 등 우리 주력 수출품목 이외에도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등 중소 품목으로의 교역 다양화가 기대됩니다.

베트남 의류에 들어간 한국산 직물, EU-베 FTA 혜택 적용 (한국세정신문, 2021년 2월 16일)

- 관세청 “원산지 누적규정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소급 적용”

앞으로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유럽연합(EU)으로 수출되는 의류에 결합되거나 추가 가공된 한국산 직물도 베트남산으로 간주해 FTA 관세혜택이 주어집니다.

관세청은 유럽연합과 베트남간 자유무역협정(이하 EVFTA)의 한국산 직물에 대한 원산지 누적규정이 EU 수입통관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16일 안내했습니다.

원산지 누적 규정이란 협정 당사국간 또는 당사국이 아닌 특정 국가에 의해 공급된 재료 등을 최종 생산국의 것으로 간주해 원산지를 판정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를 말하며, EVFTA는 협정 당사국이 아닌 한국산 직물에 대해 원산지 누적규정을 허용하는 최초의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 EU-베트남 FTA 누적규정 적용 개요도



▲ 자료: 관세청

관세청은 EVFTA는 지난해 8월 체결됐지만 EU 집행위로부터 이런 내용이 지난 4일 공식 통보됨에 따라 혜택이 본격 부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원단 및 의류 소재를 수출하는 기업은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중국 등의 기업에 비해 상당한 경쟁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국내 직물 수출기업이 EVFTA 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하고, 한-EU FTA 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 방식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 2021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socialmedia



kpmg.com/app

